

의안번호	2207745
의 퇴 인	한기호의원
회 답 일	2025.3.5.
추계번호	25D0608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2,100만원, 2031년 11억 6,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9억 1,200만원(연평균 9억 8,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안 제6조)	10	10	10	10	10	50	10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안 제11조)	311	952	1,245	1,197	1,157	4,862	972
합계	321	962	1,255	1,207	1,167	4,912	982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전역지원금의 지급(안 제9조) 여부와 수수료 감면(안 제12조) 여부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제6조(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직(국방·경제·교육 등의 분야 전문가)으로 함	의무규정
3	제6조(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둠(제4항)	의무규정
4	제9조(전역지원금의 지급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5	제10조(취업지원)	국가는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병역 이행에 따른 취업준비 지연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재량규정

		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6	제11조(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	병역이행자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만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	의무규정
7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수행 가능
2	제6조(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
3	제6조제4항(실무위원회의 설치)	×	국가보훈부 소속 관련 부서가 실무위원회 업무 대행
4	제9조(전역지원금의 지급 등)	×	전역지원금의 적정 단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5	제10조(취업지원)	×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해외 취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저변확대’ 및 ‘창업 사업화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원
6	제11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	○	—
7	제12조(수수료의 감면)	×	수수료 감면 시험의 종류, 시험별 수수료 단가, 수수료 감면을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수수료 수입 감소액의 추계가 불가능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안 제6조)과 병역이행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안 제11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 (대상인원) 2024년 기준 병역이행자 수에 20세 남자(병역판정검사 대상) 인구감소율($\Delta 5.76\%$)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을 추정한 후, 입대인원 대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비율(7.18%)을 적용함
 - (1인당 평균대출잔액) 2024년 기준 군복무 중 이자면제자의 평균대출잔액(연간 1.8백만원 / 1학기 0.9백만원)에 국회예산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대출학기 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남성 평균대출잔액(약 600만원)을 고려하여, 군복무 후에는 4학기분의 학자금을 각각 대출받는다고 가정함
 - (이자율) 한국장학재단이 2021년 1학기 이후 현재까지 공시하고 있는 이자율(1.7%)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면제 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1.5년, 3개 학기)로 가정함
- 다만, 재정수반요인 중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전역지원금 지급(안 제9조), 취업지원(안 제10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실태조사 실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¹⁾에서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예산[보훈정책개발(7167-425), 2024년 기준 8억원]의 범위²⁾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전역지원금 지급은 병역이행자에게 지급할 전역지원금의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그 적정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 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국가보훈부는 3년 주기로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실태조사도 이에 포함 되어 있음

-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2]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계획(안): 2024~2027년

(단위: 천원)

		2024	2025	2026	2027
지급단가 (월)	장기복무 제대군인	770	810	930	990
	중기복무 제대군인	550	580	850	990

주: 전직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8개월, 중기복무 제대군인 7개월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취업지원의 경우 제정안에 따른 사업수행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고용노동부 소관 취업지원³⁾,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취창업지원⁴⁾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안 제6조)

- 회의참석수당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 위원회의 회의일수와 참석수당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심의위원회의 정수가 15명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은 과반수인 8명으로 가정함
 -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으로 1인당 25만원⁵⁾씩 지급하고, 회의는 연 5회⁶⁾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234-300) 845,709백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7041-316) 8,910백만원, 해외취업지원(1051-304) 47,116백만원 등

4)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403,567백만원, 창업저변확대(5132-301) 20,318백만원 등

5)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대면회의가 연평균 5회인 점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도 연 5회 개최된다고 가정함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3]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인원(A, 명)	8	8	8	8	8	—
	지급단가(B, 천원)	250	250	250	250	250	—
	회의일수(C, 일)	5	5	5	5	5	—
	소 계 (D=A×B×C, 백만원)	10	10	10	10	10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의 추가재정소요는 연도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인원⁷⁾에 1인당 평균대출잔액 추정치, 대출학기 수,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대상인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인원은 2024년 기준 병역이행자(현역 병등+사회복무요원) 216,471명에 20세 남자 인구감소율⁷⁾(△5.76%)을 적용하여 연도별 병역이행 인원을 추정한 후, 입대인원 대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비율(7.182%)⁸⁾을 적용하여 추정함

7) 20세 남성(병역판정검사 대상) 인구수 현황: 2020~2024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감율
20세 남성 인구수(명)	322,576	332,966	289,873	256,777	254,461	△5.76%

자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8) 입대인원 대비 군복무 기간 중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비율: 2021~2023년

		2020	2021	2022	2023	평균
입대 인원 (명)	징집병(A)	109,371	97,649	90,358	85,324	91,110
	상근예비역(B)	9,994	10,012	5,330	5,862	7,068
	모집병(C)	126,775	118,105	95,843	101,864	105,271
	사회복무요원(D)	35,160	36,459	30,512	29,991	32,321
	소계(E=A+B+C+D)	281,300	262,225	222,043	223,041	235,770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인원(F, 명)		—	39,846	35,118	30,990	35,318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비율 [G=F/(E _t +E _{t-1}), %]		—	7.331%	7.252%	6.963%	7.182%

자료: 병무청 「병무통계연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4] 병역이행자(현역병등+사회복무요원)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역병 등	현역병(A)	246,909	232,608	225,227	196,495	189,478
	전환복무(B)	11,273	8,474	4,471	1,592	—
	소계(C=A+B)	258,182	241,082	229,698	198,087	189,478
사회복무요원(D)		31,492	30,366	31,152	29,502	26,993
합계(E=C+D)		289,674	271,448	260,850	227,589	216,471

자료: 국가보훈부와 병무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추정인원: 2024~2031년

(단위: 명)

	2024	2027	2028	2029	2030	2031
병역이행 추정인원(A)	216,471	181,193	170,761	160,930	151,664	142,932
학자금대출 이용비율(B)	7.182%	7.182%	7.182%	7.182%	7.182%	7.182%
대출이자 면제 추정인원(C=A×B)	15,547	13,013	12,264	11,558	10,892	10,265

주: 조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병무청,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1인당 평균대출잔액) 1인당 학자금대출 평균잔액은 2024년 기준 군복무 중 이자면제자의 평균대출잔액(연간 1.8백만원 / 1학기 0.9백만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⁹⁾을 적용하여 추정함

[표 6]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평균대출잔액(군복무 중) 추정: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명)	현역병(A)	33,341	31,224	27,879	24,646	20,791
	전환복무(B)	1,431	932	378	106	4
	사회복무요원(C)	7,968	7,690	6,861	6,238	5,490
	소계(D=A+B+C)	42,740	39,846	35,118	30,990	26,285
이자면제액(E)		1,707	1,418	1,195	1,050	806
1인당 연간 평균대출잔액 추정치 [F=E/(D×1.7%)]		2.35	2.09	2.00	1.99	1.80

주: 1인당 연간 평균대출잔액 추정치는 연도별 이자면제액을 '이자면제 인원과 이자율(1.7%)'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9)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11. 기준): 2025~2031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2.0%

[표 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1인당 평균대출잔액 추정: 2024~2031년

(단위: 백만원)

	2024	2027	2028	2029	2030	2031
연간	1.80	1.91	1.95	1.99	2.03	2.07
1학기당	0.90	0.96	0.98	0.99	1.01	1.03

자료: 국가보훈부, 병무청,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대출학기 수)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남성 평균대출잔액이 약 600만원¹⁰⁾인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따라 군복무 후에는 첫 학기부터 4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각각 받는다고 가정함
- (이자율)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는데, 2021년 1학기 이후 현재까지 공시하고 있는 이자율 1.7%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면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1.5년, 3개 학기)로 가정함

[표 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율 공시 현황: 2021~2025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자율(공시)	1.7%	1.7%	1.7%	1.7%	1.7%

자료: 국가보훈부, 병무청,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군복무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그 복무기간만큼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8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군복무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27년 전역자	1학기대출	106	106	108								
	2학기대출		100	108	108							
	3학기대출			108	108	110						
	4학기대출				108	110	110					
2028년 전역자	1학기대출			102	102	104						

10)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11. 기준): 2025~2031년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당 평균대출잔액(백만원)	6.33	6.30	6.25	6.31	6.45

	2학기대출				102	104	104						
	3학기대출					104	104	106					
	4학기대출						104	106	106				
2029년 전역자	1학기대출					98	98	100					
	2학기대출						98	100	100				
	3학기대출							100	100	108			
	4학기대출								100	102	102		
2030년 전역자	1학기대출							94	94	96			
	2학기대출								94	96	96		
	3학기대출									96	96		
	4학기대출										96		
2031년 전역자	1학기대출									90	90		
	2학기대출										90		
소 계		106	205	425	527	629	616	604	593	587	570		
합 계		311			952		1,245		1,197		1,157		4,862

주: 1) 각 학기별 이자면제의 추가재정소요는 해당연도 전역자 중 이자면제 추정인원(2027년 1학기 기준, 13,013명)에 해당연도 학기별 1인당평균대출잔액(2027년 1학기 기준, 0.96백만원), 이자율(1.7%/2)을 각각 곱하여 산출함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2,100만원, 2031년 11억 6,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9억 1,200만원(연평균 9억 8,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안 제6조제3항)	10	10	10	10	10	50	10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안 제11조)	311	952	1,245	1,197	1,157	4,862	972
합계	321	962	1,255	1,207	1,167	4,912	982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전역지원금의 지급(안 제9조) 여부와 수수료 감면(안 제12조) 여부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군복무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의 인원, 비율, 1인당 평균대출잔액, 이자율은 ‘군복무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의 과거 추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변수가 달라지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